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100605 판결 [자동차단독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3. 7. 11.

판결 선고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 10. 접수 D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10. 접수 D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하단22104, 2020하면2210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22. 12. 20. 면책결정을 받아 2023. 1. 4.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게 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자로서 원고의 면책결정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1)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제492조2)에서 정한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별제권자의 지위가 소멸하였고, ② 채권 전부에 대해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별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나 이를 위와 같이 설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별제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별제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상현

별지

1) 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 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